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20가단1324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21. 3. 30.

판결 선고2021. 4. 27.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681,837원과 그 중 4,010,938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9. 8. 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15. 8. 19.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계약만료일 2018. 3. 12.,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4.89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 B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그리고 D는 2016. 12. 9.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게, E는 2018. 10. 26.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으며,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각 그 무렵 피고 B에게 통지되었다.

다. 한편, 피고 B의 아버지인 F이 2019. 7. 15.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피고 C(F의 처이자 피고 B의 어머니)와 그 자녀들인 G, H, 피고 B가 2019. 8. 9. F의 소유였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피고 C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9. 10. 31.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액은 2020. 5. 28. 기준으로 합계 9,681,837원(= 원금 4,010,938원 + 인수전 이자잔액 3,389,659원 + 인수후 이자잔액 2,281,2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양수금 합계 9,681,837원과 그 중 원금인 4,010,938원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4.8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 피고 B가 2015. 8. 19. D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이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였고, 2018. 10. 26.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순차 양도받았으며 각 채권양도사실이 피고 B에게 통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양도받은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9. 8. 9. 이전에 성립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피고 B의 아버지인 F이 사망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피고 B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가 자신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2/9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 C에게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¹⁾.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 B는 그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2/9 지분(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재회

별지

1)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0. 2.경 F과 함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I조합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 B는 위 대출금을 자신이 변제하지 못하면 상속지분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대출금을 전혀 갚지 않았고, 이에 2013. 7. 15.경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을 올려 받아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는바, 피고 B는 자신의 상속분(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2/9 지분)을 초과하는 대출금을 미리 가져감으로써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의 상속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룬다. 그러나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설령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을 F와 피고 C가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F이 피고 B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을 갖는 외에 피고 B가 상속지분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나 피고 B가 그와 같이 특별수익을 받음으로써 추후 F의 사망에 따른 상속분이 없게 된다는 점이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